



제 433회 국회 (임시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졸업 학년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인정 >

■ 김위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5541호)

2026. 3.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 문 위 원 한 석 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졸업 학년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인정	2

I. 제안경위

2025년 12월 23일 김위상의원이 대표발의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12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불인정 사유에 ‘학업을 사유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을 두고 있고, 고용노동부는 마지막 학기를 남긴 사람만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그런데, ‘학업을 사유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이라는 규정은 모호할 뿐만 아니라, 졸업 전 마지막 학기만 예외로 인정하는 것은 시험 및 졸업 준비 등으로 바쁜 졸업예정자에게 지나치게 촉박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재학 중’이라는 불인정 요건은 유지하되, 졸업까지 2학기 이하로 남은 사람은 예외를 인정해주도록 하여 졸업 학년부터는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청년 취업을 적극 장려하기 위한 것임(안 제7조제3항제1호).

Ⅲ. 검토의견

1. 졸업 학년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인정

가.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개정안은 현행법상 구직촉진수당의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는 대상에 학업 사유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이 규정된 것에 “각종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졸업까지 2학기 이하로 남은 사람은 제외한다”라는 단서를 추가하여 학업으로 인한 불인정 사유를 구체화하고 졸업까지 1학기 또는 2학기가 남은 졸업 학년에 있는 자는 구직촉진수당의 수급자격을 인정하도록 하는 것임.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구직촉진수당의 수급 요건)	제7조(구직촉진수당의 수급 요건)
①·② (생략)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 ----- ----- ----- -----.
1. 제8조에 따른 취업지원 신청 당시 <u>학업</u> , <u>군복무</u> , <u>심신장애</u> 및 <u>간병</u> 등 대통령령으로 정	1. ----- ----- <u>학업</u> (<u>각종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졸업까지 2</u>

하는 사유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u>학기 이하로 남은 사람은 제외한다), 군복무-----</u> ----- ----- -----
2. ~ 7. (생략) ④ (생략)	2. ~ 7.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현행법 제7조제3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호 내지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제7조제3항제1호는 “취업지원 신청 당시 학업, 군복무, 심신장애 및 간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이며,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는 법 제7조제3항제1호에서 정하는 학업 사유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은 상급학교 진학, 전문자격증 취득 등을 하려는 사람으로서 각종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이라고 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원칙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에게는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다만 제7조제3항은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51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 제2조는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업지원을 신청할 당시 15세 이상 69세 이하인 사람 가운데 별표1에서 정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며 [별표 1]의 17호가 “17. 대학교(대학원) 졸업예정자: 대학교 및 대학원 최종 학년 마지막 학기 재학생 및 휴학생”이라고 정하고 있는바, 고용노동부는 각종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중 ‘대학교 및 대학원 최종 학년 마지막 학기 재학생 및 휴학생’에게만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취업지원서비스와 제7조의 구직촉진수당의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다고 함.

그런데 법률이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이라고 정하고 있는 것은 명확하지 않다고 볼 소지가 있고 졸업 전 마지막 학기에만 취업지원 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의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은 졸업 요건 충족 등으로 바뀐 졸업예정자에게 지나치게 촉박할 수 있으므로, 개정안은 학업 사유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는 대상에서 “졸업까지 2학기 이하로 남은 사람”을 제외한다는 점을 법률에 규정하고 해당 학생들에게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하려는 것임.

개정안에 따르면 졸업까지 2학기가 남은 자라고 하더라도 취업활동 계획 수립 참여 및 취업지원·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하며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바, 대학교 및 대학원 학생은 졸업 직전 바쁜 시기보다 비교적 여유로운 시기에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 국가적으로 취업지원·구직활동지원 특히 청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점에 입법의 의의가 있음.

다만 개정안에 관하여 구직촉진수당의 지급기간에 제한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구직촉진수당은 원칙적으로 수급자격의 인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수급자격자가 따로 신청한 경우에도 최대 1년까지만 지급할 수 있으므로(제20조 제1항·제2항), 졸업까지 2학기 남은 때에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그 때부터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았다가 졸업 이후에는 지원을 받지 못하면서 구직활동을 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더욱이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이 종료된 이후에는 최종 회차 지급기간의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야 다시 취업지원 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제29조제3항, 시행령 제13조제1항) 학생 시기의 제도 활용 이후 정작 중요한 시기에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고용노동부는 졸업 2학기 전 재학생은 학업과 구직활동 병행시 취업준비 몰입도가 낮아지고 취업지원서비스에 제대로 된 참여도 어려울 것이 우려되며, 이 시기부터 지원하는 경우 졸업과 동시에 취업지원이 종료되어 본격적 구직기간에 취업지원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개정안은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시행령과 고시를 개정하는 것을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임.

기획예산처 역시 구직촉진수당은 본격적인 구직활동이 가능한 시기에 지원할 필요가 있고 개정안에 따르면 본격적 구직기간에 취업지원

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개정안은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538